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8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서영교·복기왕·김남근

차지호 · 정태호 · 한민수

용혜인 • 박해철 • 김교흥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. 또한, 불법적 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 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.

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.

이에 전쟁, 폭동,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 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(안 제73조의3 신 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국회의장은 전쟁, 폭동,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 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 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.
 -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.
 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국회
	의장은 전쟁, 폭동, 계엄 등 불
	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장에서
	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
	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
	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
	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
	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
	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
	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
	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
	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 <u>7</u>
	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
	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
	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
	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.
	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
	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
	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
	표결할 수 있다.
	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

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 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